

감정평가서

APPRAISAL REPORT

건명: 박교성 소유물건(2026타경407)

의뢰인: 울산지방법원 사법보좌관 김도경

감정평가서번호: B2607-13-023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의뢰인 또는 제출처가 아닌 자)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改作), 전재(轉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주)정일감정평가법인 울산양산지사

(선박)감정평가표

본인은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이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기에 서명날인합니다.

감정평가사
윤제용

(주)정일감정평가법인 울산양산지사 지사장 하우명

(인)

(서명또는인)

감정평가액	육천삼백육십팔만구천원정 (₩63,689,000.-)				
의뢰인	울산지방법원 사법보좌관 김도경		감정평가 목 적	법원경매	
제출처	울산지방법원 경매10계		기준가치	시장가치	
소유자 (대상업체명)	박교성 (2026타경407)		감정평가 조 건	-	
목록표시 근거	귀 제시목록		기준시점	조 사 기 간	작 성 일
기 타 참고사항	-		2026.07.31	2026.07.31	2026.08.05
감 정 평 가 내 용	공부(公簿)(의뢰)		사 정		감 정 평 가 액
	종 류	면적(㎡) 또는 수량	종 류	면적(㎡) 또는 수량	단 가 금 액
	선박	1척	선박	1척	- 23,689,000
	어업허가권	1식	어업허가권	1식	- 40,000,000
		이	하	여	백
	합 계				₩63,689,000
심사확인	본인은 이 감정평가서에 제시된 자료를 기준으로 성실하고 공정하게 심사한 결과 이 감정평가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므로 이에 서명날인합니다. 심사자 : 감정평가사 하우명 (인)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 감정평가의 개요

1. 감정평가의 목적

본건은 2011년 07월 01일에 진수된 동력선 선양호(2.99톤, 어선번호:1107001-6317106)에 대한 울산지방법원의 경매(2026타경407) 목적의 감정평가 건임.

2. 감정평가의 기준

본건 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감정평가 실무기준」 등 감정평가 관련 제규정 및 감정평가 일반이론에 따라 감정평가함.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3. 대상물건의 현황

구분			내역
선박명칭			선양호
어선번호			1107001-6317106
선박종류(용도)			동력선 선양호
선적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강양길 42-6(울주군 강양항)
조선지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용정리 2227번지
조선소			(주)한일
진수일자			2011년 07월 01일
건조일자			-
<선체>	총 톤수		2.99
	순 톤수		-
	적화톤수		-
	주요치수 (M)	길이	9.68
		너비	3.15
		깊이	0.70
<기관>	기관의 종류		선박용 디젤기관
	실마력/회전수		360마력
	제작소		-
	제조일자		-

4. 기준시점 결정 및 그 이유

대상물건의 가격조사를 완료한 2026년 07월 31일임.

5. 실지조사 실시기간 및 내용

대상물건에 대한 실지조사 실시기간은 2026년 07월 31일임.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I. 감정평가의 기준가치 및 조건

1. 기준가치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토지등(이하“대상물건”이라 한다)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인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하되, 감정평가목적에 고려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음.

2. 감정평가의 조건

없음.

3. 참고 및 유의 사항

가. 대상물건 선박의 목록표시근거는 선박원부 및 현장조사내용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하였음.

나. 대상물건 선박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강양리 390' 앞 신항내 포구에 위치하며, 동 장소에서 실사하였음.

다. 대상물건 선박의 검사유효기간 : 2021년 07월 04일부터 2026년 07월 03일까지

라. 대상물건 선박은 탐문조사 시 "어선(연안자망, 어선번호:1107001-6317106, 울주군청 문의)" 어업허가(허가기간 : 2024.01.01. ~ 2028.12.31.)를 득한 것으로 탐문되며, 어선 및 그 어업허가는 일체로 거래되는 관행 및 관련규정(수산업법 제 45조,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 어구 또는 시설물을 어업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매입한 자는 그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을 고려하여 어업허가권을 별도로 감정평가하였으니 선박 및 어업허가권의 일괄 경매여부 및 어업허가권에 대한 정상적인 지위 승계 가능 여부 등을 재확인하시기 바람.

마. 대상물건 선박의 일부 의장품은 도난방지를 위하여 분리되어 선박 외의 별도의 장소에 보관 중이며, 정상 작동 유무는 별도 확인이 필요하니 경매진행 및 입찰 시 참고바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II. 감정평가의 방법 및 적용

1. 개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1조는 감정평가의 방식을 규정하고 있는데, ①원가법, 적산법 등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원가방식, ②거래사례비교법, 공시지가기준법, 임대사례비교법 등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비교방식, ③수익환원법, 수익분석법 등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수익방식이 있는데, 토지 가치평가는 공시지가기준법, 거래사례비교법이 주로 적용되며, 건물은 주로 원가법이 적용됨.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는 제1항은 규정에서 대상물건별로 정한 주된 평가방법의 적용을 원칙으로 하며,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어느 하나의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시산가액을 다른 방법으로 산정한 시산가액과의 합리성을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하되, 대상물건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는 합리성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2. 관련규정

가. 감정평가실무기준 630.3.3 [선박의 감정평가방법]

- ① 선박을 감정평가할 때에는 선체·기관·의장별로 구분하여 감정평가하되, 각각 원가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 ② 선박을 감정평가할 때에는 선체는 총 톤수, 기관은 엔진 출력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③ 선박의 감가수정은 선체·기관·의장별로 정률법을 적용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정도·관리상태·수리여부 등을 고려하여 관찰감가 등으로 조정하거나 다른 방법에 따라 감가수정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라 감가수정을 하는 경우 「수산업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른 [별표4]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⑤ 선박으로서 효용가치가 없는 것은 해체처분가액으로 감정평가할 수 있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6조 [그 밖의 물건의 감정평가]

제26조(그 밖의 물건의 감정평가) 감정평가법인등은 제14조부터 제25조까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대상물건을 감정평가할 때에 이와 비슷한 물건이나 권리 등의 경우에 준하여 감정평가해야 한다. <개정 2022. 1. 21.>

3. 평가방법의 적용

가. 개요

대상물건은 선박으로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0조 제3항에 따라 동종 유사 선박의 선체 신조가격, 기관 및 의장품의 구조, 규격, 형식, 용량 및 현상 등을 참작한 선체, 기관별 원가법으로 감정평가 하되, 유사선박의 거래사례 포착의 어려움 및 대상물건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감정평가방법인 거래사례비교법과 수익환원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주된 방법으로 산정한 시산가액의 합리성 검토는 생략하였음.

나. 원가법(주된 방법)

“원가법”은 기준시점에서 선체 · 기관 · 의장품별로 재조달원가를 산출하고, 이를 감가수정하여 대상물건인 선박이 갖는 현재의 가격, 즉 원가를 구하는 방법을 말하며, 이 방법은 상각자산(선박, 건물, 기계기구류, 구축물 등)에 적용되는 방식으로 우리나라 현실로서는 선박감정평가에 가장 적합한 방법임.

다. 거래사례비교법

“거래사례비교법”은 대상 선박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선박의 매매사례 또는 방매사례와 비교하여 기준시점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을 가하여 가격을 추정하는 방법을 말하며, 선박에서의 물적 유사성과 동일성이란 선종, 톤수, 선형, 속력 기타 기기의 유사성, 동일성을 말하고, 시간적 유사성은 사례의 발생일과 대상물건 선박의 기준시점 사이가 가까워야 된다는 것을 의미함.

최근 시장 경기상황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선박가격이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시간적 유사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선박은 본질적으로 각각의 성능을 달리할 뿐만 아니라 동일 선박에 있어서도 실제 매매가격은 선령, 유지 및 관리상태 등에 따라 달라지는 예가 적지 않고, 대상 선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박과 비교 할 사례 선박에 대해서도 가능한 한 선령, 선종, 주기마력과 속력, DWT 및 G/T, 선형, 선박 의장품과 현황, 선급, 기준시점과 시차, 성능, 건조 조선소 등이 대상 선박과 동일 또는 유사하여야 하나 거래가격 추이 및 객관적인 실거래가격 수준 파악에 어려움이 있음.

라. 수익환원법

“수익환원법”은 대상물건을 운용함으로써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으로서, 선박의 순수익은 운항항로와 해상물동량의 변동, 시황의 변동, 국제 경기에 따라 극히 민감하므로 안정된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고, 또한 적절한 환원이율의 채택이 곤란하므로 대상물건의 평가방법적 용에 부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4. 기타 사항

없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V.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1. 적용 감정평가 방법

“원가법”이란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하며, 적산가액이란 원가법에 따라 산정된 가액을 말함.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0조 제3항에 따라 동종 유사 선박의 선체 신조가격, 기관 및 의장품의 구조, 규격, 형식, 용량 및 현상 등을 참작한 선체, 기관별 원가법으로 감정평가 하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대상 선박의 감정평가액을 산정하였음.

2.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가. 재조달원가(신조단가) 산정

1) 개요

“재조달원가”란 대상물건을 기준시점에 재생산하거나 재취득하는 데 필요한 적정원가의 총액을 말함. 대상물건을 일반적인 방법으로 생산하거나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하되, 제세공과금 등과 같은 일반적인 부대비용을 포함함.

2) 국산기계기구류의 재조달원가

국산기계기구류의 재조달원가는 기준시점 당시 같거나 비슷한 물건을 재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하되, 명칭 및 규격이 같은 물건인 경우에도 제조기술, 제작자, 성능, 부대시설의 유무 등에 따른 가격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야 함.

3) 도입기계기구류의 재조달원가

도입기계기구류의 재조달원가는 수입가격에 적정한 부대비용을 포함한 금액으로 함. 다만, 수입시차가 상당하여 이 방법에 따라 산정된 재조달원가가 부적정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대상물건과 제작자·형식·성능 등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최근 수입가격에 적정한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함. 상기의 방법에 따라 재조달원가를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같은 제작국의 동종 기계기구류로서 가치형성요인이 비슷한 물건의 최근 수입가격 또는 해당 기계기구류의 도입 당시 수입가격 등을 기준으로 추정한 수입가격에 적정한 부대비용을 더하여 산정할 수 있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4) <선체> 신조가격수준

선박감정평가자료집 (한국감정평가사협회, 2023-01-01기준)

선종	규모	건조원가(톤)
연안허가어선	1톤미만	1,400만원
	1~3톤급	1,400만원 ~ 4,800만원
	3톤~9.77톤급	4,800만원 ~ 26,000만원
	9.77톤~20톤급	26,000만원 ~ 55,000만원

5) <기관> 신조가격수준

선박감정평가자료집 (한국감정평가사협회, 2023-01-01기준)

구분		규모	건조원가(톤)
주기관	Marine Diesel Engine	고속	147,000 ~ 275,000
		중, 저속	367,750 이하
보조기관	Marine Diesel Engine	국산고속	88,000 ~ 184,000
		외산 중, 고속	169,000 ~ 250,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6) 유사선박의 감정평가 사례

<출처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기호	선박명	선질	총톤수 (G/T)	진수일	평가 목적	기준시점	재조달원가 (G/T)
㉠	동력선 권**호	FRP	3.0	2021.02.24	경매	2026.07.20	24,000,000
㉡	동력선 찬*호	FRP	2.99	2019.01.29	경매	2025.04.25	24,000,000
㉢	동력선 잔*호	FRP	2.32	2015.10.30	경매	2026.06.18	17,000,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6) 제조달원가(신조단가) 결정

제조달원가는 대상 선박을 기준시점에 재생산하거나 재취득하는 것을 상정하는 경우에 그에 필요한 적정원가의 총액이나, 선박은 선형과 규모, 구조 및 성능 등이 각기 상이하여 정확한 신조가액을 파악하기는 곤란한 바 대상 선박은 선종별 선체 및 기관의 신조가격 참고자료 및 유사 선박의 신조가격 수준과 감정평가사례 등을 참고하고 선체, 기관, 의장품의 구조, 규격, 형식, 용량 등에 따른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조달원가(신조단가)를 결정함.

일련 번호	선명	구분	제조달원가(원)	적용단위
1	선양호	선체	20,000,000	G/T
		기관	150,000	HP
		의장품	'선박의장품 감정평가 명세표' 참조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나. 감가수정

1) 개요

“감가수정”이란 대상물건에 대한 재조달원가를 감액하여야 할 요인이 있는 경우에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또는 경제적 감가 등을 고려하여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조달원가에서 공제하여 기준시점에 있어서의 대상물건의 가액을 적정화하는 과정을 말함.

2) 감가수정 방법의 선정

기계기구류는 정률법으로 감가수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현상 및 관리상태 등을 고려하여 관찰감가 등으로 조정하거나 다른 방법에 따라 감가수정할 수 있음. 본건의 경우 대상물건에 가장 적합한 정률법을 적용하여 감가수정하였음.

3) 내용연수의 산정

“경제적 내용연수”란 물리적 내구연한의 범위 내에서 물건의 유동성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는 사용가능기간임. 대상물건의 내용연수 조정은 수산업법 시행령,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발간 “유형고정자산 내용연수 자료집”의 동종 또는 유사물건의 내용연수 등을 참고하고 대상 선박의 유지, 관리상태 및 자본적 지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였음.

■ 수산업법 상 선체의 내용연수와 잔존가치율

<출처 : 「수산업법 시행령」별표10>

선질별	내용연수	잔존가치율
강선	25년	20%
강화플라스틱(F.R.P)선	20년	10%
목선	15년	1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선체의 내용연수와 잔존가치율

<출처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발간 선박감정평가(2023-01-01 기준)>

용도	선종별	내용연수	감가상각법	감가율	잔존가치율
여객선	강선	20년	정률법	0.109	10%
	경금속선	20년	정률법	0.109	10%
	합성수지선(F.R.P)	20년	정률법	0.109	10%
	목선	12년	정액법	0.075	10%
화물선	강선 - 일반화물선	20년	정률법	0.1045	11%
	강선 - 유조선	20년	정률법	0.109	10%
	강선 - 특수화물선	14년	정률법	0.152	10%
	강선 - LNG운반선	20년	정률법	0.109	10%
	합성수지선(F.R.P)	20년	정률법	0.109	10%
	목선	14년	정액법	0.0643	10%
예인선	강선	16년	정률법	0.134	10%
	목선	12년	정액법	0.075	10%
부선	강선	16년	정률법	0.134	10%
	시멘트선	10년	정액법	0.090	10%
기타선	강선	20년	정률법	0.134	10%
	경금속선	12년	정률법	0.175	10%
	합성수지선(F.R.P)	12년	정률법	0.175	10%
	목선	10년	정액법	0.090	1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의장품의 내용연수와 잔존가치율

<출처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발간 선박감정평가(2023-01-01 기준)>

시설품명	내용연수	잔존가치율
의장품	15	10%

■ 선체의 내용연수와 잔존가치율

<출처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발간 선박감정평가(2023-01-01 기준)>

설비의 종류	영명(선질/세부종류)	구분	내용연수
화물선, 유조선	강조, 일반화물선, 전용화물선, 냉동화물선, 화학제품 운반선	선체	20 ~ 25
		기관	20
여객선, 어선, 준설선, 구조선	강조	선체	20
		기관	20
원양어선	참치연승어선, 오징어채낚기선, 참치선망어선, 스탠트롤선	선체	20
연근해어선	선망본선, 등선, 선어운반선, 기선저인망어선, 근해트롤선	기관	20
여객선, 어선, 화물선	목조	선체	15 ~ 20
		기관	15 ~ 20
여객선, 어선	F.R.P	선체	15 ~ 20
		기관	15 ~ 20
토운선, 부선	강조	선체	20
모터 탑재 어선	-	-	6
의장품	-	-	15 ~ 2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경제적 내용연수 및 경과연수의 결정

선명	기준시점	진수일	구분	경과연수	잔존연수		내용연수	비고
					실제	유효		
선양호	2026.07.31	2011.07.01	선체	15	5	5	20	-
			기관	15	5	5	20	-
			의장품	'선박의장품 감정평가 명세표' 참조				

4) 최종잔가율 결정

"잔가율"이란 유형고정자산의 운용에 따른 경제적 효용을 다한 후에도 해당 자산을 처분함으로써 취득할 수 있는 가치의 비율로서, 대상 선박은 경제적 내용연수 만료 시 경제적 가치, 시장가격 및 대체제의 상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함.

최종잔가율 (%)	선체	기관	의장품
	20	20	15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3. 감정평가액 산출

일련 번호	구분	재조달원가	내용 연수	경과 연수	잔존연수		잔존 가치율	규격	단가(원)	감정평가액 ¹⁾
					실제	유효				
1	선체	20,000,000 원/GT	20	15	5	5	0.178	2.99톤	3,560,000	10,644,000
	기관	150,000원/ HP	20	15	5	5	0.178	360마력	26,700	9,612,000
	의장품	'선박의장품 감정평가 명세표' 참조								3,433,000
합 계										23,689,000

1) 천원미만 반올림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V. 감정평가액의 결정

1. 감정평가액 결정

일련번호	선박명	구분	수량	감정평가액 (원)	비고
1	선양호	선체	2.99 G/T	10,644,000	-
		기관	360 PS	9,612,000	-
		의장품	8점	3,433,000	관찰감가
		선박 소계		23,689,000	-
		어업허가권	1식	40,000,000	연안자망
합계				63,689,000	-

2. 감정평가액 결정 의견

대상 선박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감정평가관련 법령과 감정평가 실무기준, 감정평가 일반이론에 따라 선종별 선체 및 기관의 신조가격 참고자료 및 유사 선박의 신조가격 수준과 감정평가사례 등을 종합참작하여 대상물건의 재조달 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가액을 산정하는 "원가법"을 적용하여 감정평가 하였으며, 담보물로서의 안정성, 환가성, 수요성, 최근 가격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가법"에 의한 감정평가액의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상기 금액을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하였음.

선박 감정평가명세표

선박명칭		선양호		선박번호		1107001-6317106		선 적 항		강양항	
구 분	적재용량 및 수량	평 가 액				산 출 근 거					
		단 가		금 액							
선 체		2.99 G/T		3,560,000		10,644,000					
기 관		360 HP		26,700		9,612,000					
의 장 품		8 점		-		3433000		선박의장품 감정평가 명세표 참조			
합 계						₩23,689,000.-					
선 박 의 내 용											
선 체	종 류	동력선		선 형	2.99 G/T		척 도				
	용 도			총 톤 수			길이 :	9.68 M			
	등 급			순 톤 수			N/T 폭 :	3.15 M			
	선 질	FRP		적화톤수	DWT		높이 :	0.70 M			
체	선 창			조 선 소	(주)한일		비 고				
	객 실			건조년월일							
	승무원실			진수년월일	2011.07.01						
기 관	종 류	선박용디젤기관		기 통 수	CYL		제 작 소				
	실 마 력	360	HP	회 전 수	RPM						
	공칭마력	HP		기 통 경	m/m		제조일자 및 번호				
	형 식			행 정	m/m						
관	속 력	Knots		보조기계 및 기관의종류와 수량				비 고			
	추진기의 종 류 및 수	나선일체식 추진기 1기		선박의장품 감정평가 명세표 참조							

선박의장품 감정평가명세표

Page : 1

일련 번호	명칭 구조*규격	* 종류 형식*용량	제 작 번 일 자	수량	감 정 평 가 액		비 고
					단 가	금 액	
	<제시외 의장품>						
1	무선송수신기 SS-2710A	shin-a 미상	1식	158,000	158,000	관찰감가 1,000,000 X 0.158(3/15)	
2	무전기 STR-6000B	삼영이엔씨 미상	1식	158,000	158,000	관찰감가 1,000,000 X 0.158(3/15)	
3	GPS플로터 나비스2600	삼영이엔씨 미상	1식	284,000	284,000	관찰감가 1,800,000 X 0.158(3/15)	
4	어군탐지기 나비스800F	삼영이엔씨 미상	1식	316,000	316,000	관찰감가 2,000,000 X 0.158(3/15)	
5	MARINE RADAR	KODEN 미상	1식	790,000	790,000	관찰감가 5,000,000 X 0.158(3/15)	
6	선박자동식별장치 AIS-50N	삼영이엔씨 2017.11	1식	527,000	527,000	관찰감가 1,800,000 X 0.293(7/15)	
7	자동조타기 SAS-70	삼영이엔씨 2013.09	1식	410,000	410,000	관찰감가 2,600,000 X 0.158(3/15)	
8	양망기 -STS -유압시스템포함	미상	1식	790,000	790,000	관찰감가 5,000,000 X 0.158(3/15)	
합		계				₩3,433,000.-	
		이	하	여	백		

어업권감정평가명세표

일련 번호	어업권의 표시	어장의 면적		평 가 가 액		비 고
		공부	사정	단 가	금 액	
1	<제시외 물건(권리)> 어업허가권 -주어업 : 연안자망 -허가기간 : 2024.01.01~2028.12.31	(1식)	1식	-	40,000,000	
	합 계				₩40,000,000.-	
	이	하	여	백		

선박 감정평가요항표

(1) 선체의 현황 (4) 운항사항	(2) 기관의 현황 (5) 실사장소	(3) 의장품의 현황 (6) 기타 참고사항
(1) 선체의 현황 본건 선박은 2011년 07월 01일 진수된 2.99톤급 FRP어선으로서 각부의 현상 및 관리상태는 보통시 됨. (2) 기관의 현황 본선에 설치된 주 기관은 360마력 선박용 디젤기관으로 현상 및 관리상태는 보통시 됨. (3) 의장품의 현황 본선에 설치 및 비치되어 있는 의장품의 관리상태는 보통시 됨. (4) 운항사항 본선의 어업의 종류는 연안자망어업임. (5) 실사장소 본선의 정박위치인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강양리 390번지 앞 강양항 신항 포구에서 실시하였음. (6) 기타 참고사항 - 선박의 검사유효기간 : 2021년 07월 04일 ~ 2026년 07월 03일 - 일부 의장품은 분리되어 선박 외의 별도의 장소에 보관 중임.		

사 진 용 지



본건 전경



본건 전경



본건 전경



조타실내부

사 진 용 지



어선 표지



의장품